

# 가족 사망 시 사회보장국이 귀하를 도울 수 있는 방법



**누**군가가 사망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회보장국으로 신고해야 합니다. 대부분의 경우, 장의사가 사회보장국에 사망 신고를 하게 됩니다. 귀하는 장의사가 사회보장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고인의 사회보장 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.

고인이 사회보장법에 의거 급부금을 받을 자격이 있을 만큼 오랫동안 일한 경우 고인의 가족 중 일부는 사회보장 급부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. **고인의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사회보장국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.** 어떤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정보를 신중하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생존 배우자가 고인과 함께 살았거나 따로 살면서 고인의 기록에 따라 특정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일시금 \$255이 지급됩니다. 만약 생존 배우자가 없다면, 사망한 달에 고인의 사회보장 기록에 따라 연금 수혜 자격이 있는 자녀에게 지급이 됩니다.
- 다음과 같은 특정 가족은 매월 지급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**자격이 있을 수도** 있습니다:
  - 60세 이상(장애인의 경우에는 50세 이상)으로 배우자와 사별한 분
  - 고인의 16세 이하 자녀나 장애를 가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모든 연령대의 생존 배우자.
  - 고인의 미혼 자녀 중 다음과 같은 경우:
    - 18세 미만(또는 초등 또는 중등 학교의 정규 학생인 경우에는 최고 19세); 또는
    - 18세 이상으로 장애가 22세 이전에 시작된 경우.
  - 특정 상황에서는 의붓자녀, 손자녀, 의붓손자녀 또는 입양된 자녀;
  - 최소한 생활비의 반을 고인에게 의존했던 62세 이상의 부모, 그리고
  - 특정 상황하에 이혼한 생존 배우자.

**고인이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있었다면,** 귀하는 고인이 사망한 달이나 그 이후에 받은 연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사망한 달이 7월이라면, 8월에 지급받은 연금을 반환해야만 합니다. 연금이 자동이체로 지급된다면,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에 연락하십시오. 사망한 달 또는 그 후에 지급 받은 모든 연금을 사회보장국에 반환하라고 요청하십시오. 연금이 수표로 지급된 경우, 고인이 사망한 달 또는 그 후에 지급 받은 수표는 현금으로 바꾸지 않도록 하십시오. 가능한 한 빨리 사회보장국에 수표를 반환하도록 하십시오.

그러나, 수혜 자격 가족들은 연금 수령인이 사망한 달의 사망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## 사회보장청에 문의

추가 정보를 원하거나 우리 간행물 사본을 찾으려면 우리 웹사이트

**www.socialsecurity.gov**를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번호 **1-800-772-1213**으로 전화하십시오(청각 장애인이거나 난청인 경우에는 우리의 TTY 번호인 **1-800-325-0778**로 전화하십시오). 우리는 모든 통화를 기밀로 취급합니다. 스페인어를 말하는 경우 2를 누르십시오. 기타 모든 언어의 경우 1을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면 영어 음성 자동 안내 후 직원이 대답합니다. 직원이 귀하의 통화를 도움 통역에게 연락할 것입니다. 통역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. 우리는 월요일~금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특정 질문에 답변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자동 전화 서비스에 의해 영어로 하루 24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또한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, 사회 보장 사무국에서는 일부 전화를 선정하여 통화내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.

